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4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리 운영 위탁기간 1년 규정 삭제 (안 제7조)
- 나. 기타 용어 정비(안 제5조 및 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 ~ 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**관내**”를 “**소재**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**보조금**”을 “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이용자격)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<u>관내</u>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이용자격) ----- ----- ----- <u>소재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	<p>제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8조(수탁운영자의 의무)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보조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8조(수탁운영자의 의무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-----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근로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박영아
연 락 처	02-3153-8693